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개정 민법(법률 제10645호, 시행 2013. 7. 1.)에 따라 가정법원에 의하여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다른 일방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 그 밖에 예규의 미비점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정법원에 의하여 친권자로 지정된 생존하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1. 나.)

3.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불임과 같음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8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의 제목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에 의한 등기신청”으로 한다.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사망·친권상실의 선고 등)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의하여 친권자로 지정된 다른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가. (1) 전단 중 “복종하는”을 각각 “따르는”으로 한다.

3. 제목 “미성년자와 후견인의 관계에 준용”을 “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준용”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위 1. 2.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미성년자와 후견인의 관계에 준용한다”를 “미성년후견인에 대하여는 2.를 준용한다”로 하며, 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②(1. 나.에 대한 경과조치) 1. 나.의 사유가 2013. 6. 30. 이전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1. <u>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u> 가. (생략) 나. <u>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그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u> 2.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 여부 가. 원칙 (1) 친권자와 그 친권에 <u>복종하는</u>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 또는 동일한 친권에 <u>복종하는</u> 수인의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 또는 그 미성년자 일방의 대리는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하 “특별대리인“이라 한다)이	1. <u>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에 의한 등기신청</u> 가. (현행과 같음) 나. <u>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사망·친권상실의 선고 등)가 있는 경우</u> <u>가정법원에 의하여 친권자로 지정된 다른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u> 2.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 여부 가. 원칙 (1) -----<u>따르는</u> ----- ----- --<u>따르는</u>----- ----- ----- ----- ----- -----

하여야 한다. 3. <u>미성년자와 후견인의 관계에 준용</u> <u>위 1. 2.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 하지 아니하는 한 미성년자와 후견인의 관계에 준용한다.</u>	----. 3. <u>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준용</u> <u>미성년후견인에 대하여는 2.를 준용한다. 다만, 미성년후견감 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	--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6